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 람 | 기 관 의 장 |
| | |

제894호 2024. 6. 27.(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4-10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 고시----- 1
- 사천시 고시 제2024-111호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산업단지 외의 사업 (부진입도로)(변경) 승인----- 2
- 사천시 고시 제2024-112호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외의 사업(주진입 도로) 실시계획(변경) 승인·지형도면 고시----- 34
- 사천시 고시 제2024-114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고시----- 46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4-928호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9
- 사천시 공고 제2024-951호 사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조례안 입법예고 57
- 사천시 공고 제2024-952호 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62

| |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사천시 고시 제2024-10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 6. 27.

사 천 시 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

| 신 고 인 | 점용·사용 승인사항 | | | 실시계획 신고 수리사항 | | 공사완료 신고수리 | |
|---|--------------------------|--------------------------------|-----------------------------------|--------------------------|--------------------------------|------------|------------|
| | 승인번호 (연월일) | 위 치 | 면적(㎡) | 신고번호 (신고일자) | 공사내역 | 신고일자 | 수리일자 |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관광진흥과장) | 2023-19 (2023.09.07.) |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산 9-4, 205-9번지선 | 630 (직접) | 2023-20 (2023.09.14.) | 비토 측사권(갯벌) 생태체험시설 탐방로 설치 | '24.06.10. | '24.06.12. |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2024-5 (2024.04.22.) | 사천시 서포면 조도리 383-1번지선 | 509.43 직접: 49.94 간접: 459.49 | 2024-4 (2024.04.24.) | 부잔교 및 도교 설치 | '24.06.17. | '24.06.20. |
| 사천시장 (해양수산과장) | 2024-7 (2024.05.07.) | 사천시 실안동 1096-39번지선 | 1036.9 직접: 79.4 간접: 957.5 | 2024-8 (2024.05.30.) | 부잔교 및 도교 설치 | '24.06.17. | '24.06.20. |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사천시 고시 제2024-111호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산업단지 외의 사업(부진입도로)(변경) 승인

사천시 고시 제2012-152호(2012.09.13.)로 최초 산업단지계획승인 · 고시하고
사천시 고시 제2023-201호(2023.08.17.)로 최종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
고시한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계획 및 산업단지 외의 사업(부진입도로)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산업
단지 외의 사업(부진입도로)(변경)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사 천 시 장

□ 축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1. 산업단지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 서부경남의 교통 요충지인 사천시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기타 제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함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26-1번지 일원

○ 면 적 : 248,498㎡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 : 당초 - 2012. 09. 13. ~ 2024. 06. 30.

변경 - 2012. 09. 13. ~ 2024. 12. 31.

나. 개발방법 : 실수요자 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변경없음)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자동차및 트레일러제조업(C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C52),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부동산업(L68-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L68112에 한함)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위탁자 - 주식회사 장원 대표이사 정형규

수탁자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정준호

나. 주 소 : 위탁자 - 경남 사천시 사천읍 두량로 14, 2층

수탁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가. 지목별 현황

| 구 분 | 합 계 | 답 | 대 | 도 | 전 | 구 | 임 | 비고 |
|---------|---------|-------|-------|-----|--------|-------|---------|----|
| 면 적(㎡) | 248,498 | 5,127 | 7,765 | 293 | 89,937 | 4,399 | 140,977 | |
| 구성비(%) | 100.0 | 2.1 | 3.1 | 0.1 | 36.2 | 1.8 | 56.7 | |
| 필지수(필지) | 48 | 2 | 2 | 1 | 18 | 9 | 16 | |

나. 소유자별 현황

| 구 분 | 합 계 | 사유지 | 공유지 | 국유지 | | | |
|---------|---------|---------|-----|-----|-------|---------|-------|
| | | | | 계 | 국토교통부 | 농림축산식품부 | 기획재정부 |
| 면 적(㎡) | 248,498 | 248,498 | - | - | - | - | - |
| 구성비(%) | 100.0 | 100.0 | - | - | - | - | - |
| 필지수(필지) | 48 | 48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 총 계 | 248,498 | 100.0 | |
| 산업시설용지 | 158,006 | 63.6 | |
| BL1 | 58,825 | 23.7 | |
| BL2 | 74,848 | 30.1 | |
| BL3 | 10,495 | 4.2 | |
| BL4 | 13,838 | 5.6 | |
| 지원시설용지 | 4,205 | 1.7 | |
| 공공시설용지 | 86,287 | 34.7 | |
| 도로 | 34,479 | 13.9 | |
| 배수지 | 1,824 | 0.7 | |
| 저류지 | 5,850 | 2.4 | |
| 폐수종말처리시설 | 1,550 | 0.6 | |
| 주차장1 | 2,070 | 0.8 | |
| 주차장2 | 1,000 | 0.4 | |
| 공원 | 3,943 | 1.6 | |
| 완충녹지 | 35,571 | 14.3 | |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나. 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단위 : 개소, m, m²)

| 류별 | 구분 | 합계 | | | 1류 | | | 2류 | | | 3류 | | |
|----|----|-----|-------------------|---------------------|-----|-----------------|---------------------|-----|-------------------|---------------------|-----|---------------|---------------|
| |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 합계 | 기정 | 7 | 2,557 '(2,066) | 38,754 '(34,479) | 2 | 1,107 '(616) | 17,671 '(13,396) | 4 | 1,330 '(1,330) | 20,352 '(20,352) | 1 | 120 '(120) | 731 '(731) |
| 중로 | 기정 | 5 | 2,384 '(1,893) | 37,791 '(33,516) | 2 | 1,107 '(616) | 17,671 '(13,396) | 3 | 1,277 '(1,277) | 20,120 '(20,120) | - | - | - |
| 소로 | 기정 | 2 | 173 '(173) | 963 '(963) | - | - | - | 1 | 53 '(53) | 232 '(232) | 1 | 120 '(120) | 731 '(731) |

※ ' ()는 축동일반산업단지 구역내 도로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 구분 | 규 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중로 | 1 | 42 | 20~26.25 | 집산 도로 | 883 '(392) | 지방도 1002호선 | 사천시경계 | 일반 도로 | -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
| 기정 | 중로 | 1 | 43 | 20 | 집산 도로 | 224 '(224) | 중로1-42 | 중로2-50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1 | 56 | 20 | 집산 도로 | 235 '(0) | 소로1-2 | 중로1-42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2 | 50 | 16~19.25 | 집산 도로 | 501 '(501) | 산업용지 BL1 | 완충녹지52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2 | 51 | 15 | 집산 도로 | 444 '(444) | 산업용지 BL1 | 중로2-50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2 | 52 | 15~18.25 | 집산 도로 | 332 '(332) | 중로2-50 | 중로2-51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2 | 257 | 8 | 국지 도로 | 53 '(53) | 중로2-51 | 산업단지경 계 | 일반 도로 | - | 사천시고시 제2021-22호 (2021.01.14.) | |
| 기정 | 소로 | 3 | 157 | 6 | 국지 도로 | 120 '(120) | 중로2-50 | 유수지⑨ | 일반 도로 | - | 〃 | |

※ ()는 축동일반산업단지 구역내 도로 연장임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 정 | 28 | 주차장 | 사다리 217-1번지 | 1,000 | - | 1,000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
| 기 정 | 29 | 주차장 | 사다리 산26-10번지 | 2,070 | - | 2,070 | 〃 | |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 원 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44 | 공원 | 소공원 | 사다리 산27-1번지 | 2,253 | - | 2,253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
| 기정 | 가 | 공원 | 소공원 | 사다리 217-1번지 | 1,690 | - | 1,690 | 사천시고시 제2021-22호 (2021.01.14.) | |

나)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소 계 | | | | | 35,571 | - | 35,571 | | |
| 기 정 | 46 | 녹지 | 완충녹지 | 사다리 182-1 | 15,450 | - | 15,450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
| 기 정 | 49 | 녹지 | 완충녹지 | 사다리 산26-4번지 | 4,963 | - | 4,963 | 〃 | |
| 기 정 | 52 | 녹지 | 완충녹지 | 사다리 135-2번지 | 15,158 | - | 15,158 | 〃 | |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3) 유통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 용수량

| 구분 | 용수수요량(㎥/일) | 비고 |
|--------------|------------|--|
| 계 | 2,087 | 계획용수량 : 2,087㎥/일 배수지용량 V=1,200㎥ (체류시간12시간) |
| 축동일반산업단지 | 663 | |
| 대동일반산업단지 | 254 | |
|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 790 | |
| 탐리지역 | 380 | |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8 | 수도공급설비 | 사다리 135-2번지 | 1,824 | - | 1,824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

4) 방재시설

가)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9 | 유수지 | 저류시설 | 사다리 산26-10번지 | 5,850 | - | 5,850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

5) 환경기초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6 | 수질오염 방지시설 | 폐수종말 처리시설 | 사다리 산26-10번지 | 1,550 | - | 1,550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

9.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총 사업비 59,047백만원 중 사업시행자 자기자본금 300백만원, 타인자
본인 금융권대출 34,236백만원, 투자금 11,200백만원, 분양수익금으로
13,311백만원으로 조달할 계획임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나. 연차별 투자계획

| 구분 | | 투자내역 | 투자액(천원) | |
|---------------------------|---------------------------|-----------|------------|------------|
| 당초 | 변경 | | 당초 | 변경 |
| 2011년~ 2014년 | 2011년~ 2014년 | 용지비 및 보상비 | - | - |
| | | 기타비 | - | - |
| | | 소계 | - | - |
| 2015년 | 2015년 | 용지비 및 보상비 | 3,000,000 | 3,000,000 |
| | | 공사비 | 1,155,000 | 1,155,000 |
| | | 기타비용 | 300,000 | 300,000 |
| | | 계 | 4,455,000 | 4,455,000 |
| 2016년 | 2016년 | 용지비 및 보상비 | 1,300,000 | 1,300,000 |
| | | 공사비 | 4,169,000 | 4,169,000 |
| | | 기타비용 | 500,000 | 500,000 |
| | | 계 | 5,969,000 | 5,969,000 |
| 2017년 | 2017년 | 용지비 및 보상비 | 2,800,000 | 2,800,000 |
| | | 공사비 | - | - |
| | | 기타비용 | 200,000 | 200,000 |
| | | 계 | 3,000,000 | 3,000,000 |
| 2018년 | 2018년 | 용지비 및 보상비 | 9,200,000 | 9,200,000 |
| | | 공사비 | - | - |
| | | 기타비용 | 1,700,000 | 1,700,000 |
| | | 계 | 10,900,000 | 10,900,000 |
| 2019년 | 2019년 | 용지비 및 보상비 | 2,120,000 | 2,120,000 |
| | | 공사비 | 600,000 | 600,000 |
| | | 기타비용 | 1,300,000 | 1,300,000 |
| | | 계 | 4,020,000 | 4,020,000 |
| 2020년 | 2020년 | 용지비 및 보상비 | 651,000 | 651,000 |
| | | 공사비 | - | - |
| | | 기타비용 | 1,063,000 | 1,063,000 |
| | | 계 | 1,714,000 | 1,714,000 |
| 2021년~ 2024년 06월30일 | 2021년~ 2024년 12월31일 | 용지비 및 보상비 | 2,553,200 | 2,553,200 |
| | | 공사비 | 20,216,000 | 20,216,000 |
| | | 기타비용 | 6,219,800 | 6,219,800 |
| | | 계 | 28,989,000 | 28,989,000 |
| 합 계 | | | 59,047,000 | 59,047,000 |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11.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없음)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위 치 |
|------------------|---------|--------|-----|
| 산업시설용지 | 158,006 | 100.0 | - |
| 계 | 58,825 | 37.2 | BL1 |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 4,702 | 3.0 | |
|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 50,817 | 32.1 | |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 3,306 | 2.1 | |
| 계 | 74,848 | 47.4 | BL2 |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 5,422 | 3.4 | |
|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 13,227 | 8.4 | |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 56,199 | 35.6 | |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 10,495 | 6.6 | BL3 |
| 계 | 13,838 | 8.8 | BL4 |
|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 5,159 | 3.3 | |
|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 8,679 | 5.5 | |

※ 산업시설용지 전체에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가능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단,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에 한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서 시행하는 임대사업은 허용함)

1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사천시 무상귀속

| 구 분 | 면 적 (㎡) | | 구성비 (%) | | 관리처분계획 |
|--------|---------|---------|---------|-------|---------|
|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
| 총 면 적 | 248,498 | 248,498 | 100.0 | 100.0 | - |
| 무상귀속면적 | 81,667 | 84,737 | 32.9 | 34.1 | - |
| 도로 | 34,479 | 34,479 | 13.9 | 13.9 | 사천시무상귀속 |
| 배수지 | 1,824 | 1,824 | 0.7 | 0.7 | 사천시무상귀속 |
| 주차장 | - | 3,070 | - | 1.2 | 사천시무상귀속 |
| 저류지 | 5,850 | 5,850 | 2.4 | 2.4 | 사천시무상귀속 |
| 공원 | 3,943 | 3,943 | 1.6 | 1.6 | 사천시무상귀속 |
| 완충녹지 | 35,571 | 35,571 | 14.3 | 14.3 | 사천시무상귀속 |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나. 사업시행자 귀속

| 구 분 | 면 적 (㎡) | | 구성비 (%) | | 비고 |
|----------|---------|---------|---------|------|----|
|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
| 사업자귀속면적 | 166,831 | 163,761 | 67.1 | 65.9 | |
| 산업시설용지 | 158,006 | 158,006 | 63.6 | 63.6 | |
| 지원시설용지 | 4,205 | 4,205 | 1.7 | 1.7 | |
| 주차장 | 3,070 | - | 1.2 | - | |
| 폐수종말처리시설 | 1,550 | 1,550 | 0.6 | 0.6 | |

1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기정 | 17 | 축동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35-2번지 일원 | 248,498 | - | 248,498 | |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 총 계 | 248,498 | 100.0 | |
| 산업시설용지 | 158,006 | 63.6 | |
| BL1 | 58,825 | 23.7 | |
| BL2 | 74,848 | 30.1 | |
| BL3 | 10,495 | 4.2 | |
| BL4 | 13,838 | 5.6 | |
| 지원시설용지 | 4,205 | 1.7 | |
| 공공시설용지 | 86,287 | 34.7 | |
| 도로 | 34,479 | 13.9 | |
| 배수지 | 1,824 | 0.7 | |
| 저류지 | 5,850 | 2.4 | |
| 폐수종말처리시설 | 1,550 | 0.6 | |
| 주차장1 | 2,070 | 0.8 | |
| 주차장2 | 1,000 | 0.4 | |
| 공원 | 3,943 | 1.6 | |
| 완충녹지 | 35,571 | 14.3 | |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단위 : 개소, m, m²)

| 구분 | 합계 | | | 1류 | | | 2류 | | | 3류 | | |
|----|-----|-------------------|--------------------------|-----|-----------------|--------------------------|-----|-------------------|--------------------------|-----|---------------|---------------|
|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 합계 | 7 | 2,557 '(2,066) | 38,754 '(34,479)) | 2 | 1,107 '(616) | 17,671 '(13,396)) | 4 | 1,330 '(1,330) | 20,352 '(20,352)) | 1 | 120 '(120) | 731 '(731) |
| 중로 | 5 | 2,384 '(1,893) | 37,791 '(33,516)) | 2 | 1,107 '(616) | 17,671 '(13,396)) | 3 | 1,277 '(1,277) | 20,120 '(20,120)) | - | - | - |
| 소로 | 2 | 173 '(173) | 963 '(963) | - | - | - | 1 | 53 '(53) | 232 '(232) | 1 | 120 '(120) | 731 '(731) |

※ ' ()는 축동일반산업단지 구역내 도로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 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중로 | 1 | 42 | 20~26.25 | 집산 도로 | 883 '(392) | 지방도 1002호선 | 사천시경계 | 일반 도로 | -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
| 기정 | 중로 | 1 | 43 | 20 | 집산 도로 | 224 '(224) | 중로1-42 | 중로2-50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2 | 50 | 16~19.25 | 집산 도로 | 501 '(501) | 산업용지 BL1 | 완충녹지52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2 | 51 | 15 | 집산 도로 | 444 '(444) | 산업용지 BL1 | 중로2-50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2 | 52 | 15~18.25 | 집산 도로 | 332 '(332) | 중로2-50 | 중로2-51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2 | 257 | 8 | 국지 도로 | 53 '(53) | 중로2-51 | 산업단지경계 | 일반 도로 | - | 사천시고시 제2021-22호 (2021.01.14.) | |
| 기정 | 소로 | 3 | 157 | 6 | 국지 도로 | 120 '(120) | 중로2-50 | 유수지⑨ | 일반 도로 | - | 〃 | |

※ ()는 축동일반산업단지 구역내 도로 연장임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 정 | 28 | 주차장 | 사다리 217-1번지 | 1,000 | - | 1,000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
| 기 정 | 29 | 주차장 | 사다리 산26-10번지 | 2,070 | - | 2,070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 원 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44 | 공원 | 소공원 | 사다리 산27-1번지 | 2,253 | - | 2,253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
| 기정 | 가 | 공원 | 소공원 | 사다리 217-1번지 | 1,690 | - | 1,690 | 〃 | |

나)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소 계 | | | | | 35,571 | - | 35,571 | | |
| 기 정 | 46 | 녹지 | 완충녹지 | 사다리 182-1 | 15,450 | - | 15,450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
| 기 정 | 49 | 녹지 | 완충녹지 | 사다리 산26-4번지 | 4,963 | - | 4,963 | 〃 | |
| 기 정 | 52 | 녹지 | 완충녹지 | 사다리 135-2번지 | 15,158 | - | 15,158 | 〃 | |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3) 유통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 정 | 8 | 수도공급설비 | 사다리 135-2번지 | 1,824 | - | 1,824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

4) 방재시설

가) 우수지

○ 우수지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면 적 (㎡) |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 정 | 9 | 우수지 | 저류시설 | 사다리 산26-10번지 | 5,850 | - | 5,850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

5) 환경기초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면 적 (㎡) |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6 | 수질오염 방지시설 | 폐수종말 처리시설 | 사다리 산26-10번지 | 1,550 | - | 1,550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면 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 비 고 |
|----------|--------|---------|--------|--------|------------|
| | | | 위 치 | 면 적(㎡) | |
| - | I-1 | 12,294 | I-1 | 1,000 | 주차장㉔ |
| - | I-2 | | I-2 | 2,070 | 주차장㉕ |
| - | I-3 | | I-3 | 1,550 | 폐수종말처리시설㉖ |
| - | I-4 | | I-4 | 5,850 | 저류시설㉗ |
| - | I-5 | | I-5 | 1,824 | 배수시설㉘ |
| - | II-BL1 | 158,006 | II-BL1 | 58,825 | 분양 후 획지 분할 |
| - | II-BL2 | | II-BL2 | 74,848 | 분양 후 획지 분할 |
| - | II-BL3 | | II-BL3 | 10,495 | 분양 후 획지 분할 |
| - | II-BL4 | | II-BL4 | 13,838 | 분양 후 획지 분할 |
| - | III | 4,205 | III | 4,205 | 분양 후 획지 분할 |
| - | IV-1-1 | 39,464 | IV-1-1 | 15,523 | 완충녹지㉙ |
| - | IV-1-2 | | IV-1-2 | 4,963 | 완충녹지㉙ |
| - | IV-1-3 | | IV-1-3 | 15,158 | 완충녹지㉚ |
| - | IV-2-1 | | IV-2-1 | 2,253 | 공원㉛ |
| - | IV-2-2 | | IV-2-2 | 1,690 | 공원㉜ |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II-BL1 | 지정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창고 및 운송관련업 • 부동산업 • 태양에너지발전업 |
| | | 권장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 부동산업 (L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한함)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
| | | 불허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장용도 이외의 시설 |
| | | 건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이하 |
| | | 용적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이하 |
| | | 높 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 이하 |
| | | 배 치 | - |
| | | 형 태 | - |
| | | 색 채 | - |
| | | 건축선 | - |
| - | II-BL2 | 지정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창고 및 운송관련업 • 부동산업 • 태양에너지발전업 |
| | | 권장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 부동산업 (L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한함)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
| | | 불허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장용도 이외의 시설 |
| | | 건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이하 |
| | | 용적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이하 |
| | | 높 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 이하 |
| | | 배 치 | - |
| | | 형 태 | - |
| | | 색 채 | - |
| | | 건축선 | - |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II-BL3 | 지정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부동산업 • 태양에너지발전업 |
| | | 권장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 부동산업 (L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한함)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
| | | 불허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장용도 이외의 시설 •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331)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332) • 석면,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C23994) |
| | | 건폐율 | • 70%이하 |
| | | 용적률 | • 300%이하 |
| | | 높 이 | • 5층 이하 |
| | | 배 치 | - |
| | | 형 태 | - |
| | | 색 채 | - |
| | | 건축선 | - |
| - | II-BL4 | 지정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부동산업 • 태양에너지발전업 |
| | | 권장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 부동산업 (L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한함)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
| | | 불허용도 | • 권장용도 이외의 시설 |
| | | 건폐율 | • 70%이하 |
| | | 용적률 | • 300%이하 |
| | | 높 이 | • 5층 이하 |
| | | 배 치 | - |
| | | 형 태 | - |
| | | 색 채 | - |
| | | 건축선 | - |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단,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에 한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서 시행하는 임대사업은 허용함)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III | 지정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에 의한 건축물 |
| | | 권장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 | | 불허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
| | | 건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이하 |
| | | 용적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이하 |
| | | 높 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 이하 |
| | | 배 치 | - |
| | | 형 태 | - |
| | | 색 채 | - |
| | | 건축선 | - |
| - | I-1 I-2 | 지정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제11호 주차전용건축물과 부대시설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정비공장에 한정한다)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 | | 권장용도 | - |
| | | 불허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
| | | 건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에 따름(100분의 90이하) |
| | | 용적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에 따름(1천500퍼센트 이하) |
| | | 높 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12조의2 제4호에 따름 |
| | | 배 치 | - |
| | | 형 태 | - |
| | | 색 채 | - |
| | | 건축선 | - |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구분 | 제어요소 | 적용구간 | 제 어 내 용 | 비 고 |
|----|--------------|---|----------------------------------|---------------------|
| 기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중로1-42호선과 중로 1-43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
| 기정 | | 중로1-43호선과 중로 2-50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
| 기정 | | 중로2-50호선과 중로 2-52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
| 기정 | | 중로2-51호선과 중로 2-52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
| 기정 | | 중로2-50호선과 소로 3-157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 소공원④

가) 공원조성계획

부지총괄표

| 구분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m ²) | | | 비 고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합 계 | | 사다리 산27-1번지 | 2,253 | - | 2,253 | |
| 기 정 | 보 행 로 | | 308 | - | 308 | |
| 기 정 | 운동시설 | | 66 | - | 66 | |
| 기 정 | 휴양시설 | | 58 | - | 58 | |
| 기 정 | 녹 지 | | 1,821 | - | 1,821 | |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시설총괄표

| 구 분 | 시 설 명 | 면 적(㎡) | 시설규모(㎡) | | 비 고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합 계 | | 2,253 | 66 | 66 | |
| 기 정 | 보 행 로 | 308 | - | - | 보행자전용도로 |
| 기 정 | 운동시설 | 66 | 66 | 66 | 파고라1동 |
| 기 정 | 휴양시설 | 58 | - | - | |
| 기 정 | 녹 지 | 1,821 | - | - | |

일반시설별조서

|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면 적(㎡) | 위 치 | 시설규모(㎡) | | | 비 고 |
|-------|-------------|--------|----------------|---------|-----|----|-----|
| | | | |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 |
| 합 계 | | 2,253 | 사다리 산27-1번지 | 66 | 66 | 1 | |
| 보 행 로 | 1 | 308 | | - | - | - | |
| 운동시설 | 2 | 66 | | 66 | 66 | 1 | 1동 |
| 휴양시설 | 3 | 58 | | - | - | - | |
| 녹 지 | 4 | 1,821 | | - | - | - | |

소공원㉔

가) 공원조성계획

부지총괄표

| 구 분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 | 비 고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합 계 | | 사다리 217-1번지 | 1,690 | - | 1,690 | |
| 기 정 | 보 행 로 | | 189 | - | 189 | |
| 기 정 | 운동시설 | | 106 | - | 106 | |
| 기 정 | 휴양시설 | | 36 | - | 36 | |
| 기 정 | 녹 지 | | 1,359 | - | 1,359 | |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시설총괄표

| 구 분 | 시 설 명 | 면 적(m ²) | 시설규모(m ²) | | 비 고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합 계 | | 1,690 | 106 | 106 | |
| 기 정 | 보 행 로 | 189 | - | - | 보행자전용도로 |
| 기 정 | 운동시설 | 106 | 106 | 106 | 파고라1동 |
| 기 정 | 휴양시설 | 36 | - | - | |
| 기 정 | 녹 지 | 1,359 | - | - | |

일반시설별조서

|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면 적(m ²) | 위 치 | 시설규모(m ²) | | | 비 고 |
|-------|------------|----------------------|----------------|-----------------------|-----|----|-----|
| | | | |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 |
| 합 계 | | 1,690 | 사다리 217-1번지 | 106 | 106 | 1 | |
| 보 행 로 | 1 | 189 | | - | - | - | |
| 운동시설 | 2 | 106 | | 106 | 106 | 1 | 1동 |
| 휴양시설 | 3 | 36 | | - | - | - | |
| 녹 지 | 4 | 1,359 | | - | - | - | |

15.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사천시청(투자유치산단과)에 두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도서 게재생략)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장 총칙

제2장 산업시설용지

제3장 지원시설용지

제4장 기타사항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축동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작성되는 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구역내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 및 건축물 대지의 규모, 용도, 형태와 공간 활동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침은 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구역내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적용한다.

제3조 (지침적용의 구성) 본 지침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총칙과 제4장 기타사항,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은 모든 건축용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제2장은 산업시설용지에, 제3장은 지원시설용지에 각각 적용한다.

제4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은 환경영향평가, 교통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관련법규 및 사전시 관련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② 본 지침 내용 중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제5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용적률”이라 함은 건축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부 건축물 연면적(동일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3. “허용용도”라 함은 그 필지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4. “불허용도”라 함은 관련 법규정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필지에는 허용되지 않은 건축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와 불허용도가 중복될 경우 불허용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5.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

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6.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최상층수에 해당하는 층의 바닥면적은 바로 아래 층 바닥면적의 50%이상이어야 한다.)
7.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 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이상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8.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 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이상 30%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9.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의장효과를 위하여 사용되는 색깔로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 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② 본 지침에서의 층수의 산정은 건축법상의 규정을 따른다.

③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2장 산업시설용지

제6조 (건축물의 용도) 산업시설용지에서의 용도규제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규 제 내 용 | 비 고 |
|--------|---|-----|
| 산업시설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산업분류, C23(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9(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0(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1(기타운송장비제조업), D35114(태양에너지발전업-지붕및주차장에한함), H52(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부동산산업(L68112)(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한함)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장용도 이외의 제조업 - 시멘트, 석회및플라스터제품제조업(C2331), 콘크리트, 레미콘및기타시멘트, 플라스터제품제조업(C2332), 석면, 암면및유사제품제조업(C23994) | |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단,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에 한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서 시행하는 임대사업은 허용함)

제7조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 |
|-----|------|-----|------|
| 용적률 | 최고층수 | 300 | 5층이하 |
| 건폐율 | 최저층수 | 70 | - |

② 산업시설용지의 건폐율은 70%이하, 용적률은 300%이하로 한다.

③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로 한다.

제8조 (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주 조 색 | 보 조 색 | 강 조 색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 없음 |

제9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①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대지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③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주차장) 산업시설내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다.

제11조 (장애인을 위한 계획) 다중이용시설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사천시 관련 조례를 적용한다.

제3장 지원시설용지

제12조 (건축물의 용도) 지원시설용지에서의 용도 규제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규 제 내 용 |
|--------|--|
| 지원시설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에 의한 건축물 권장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

제13조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음

| | | | |
|-----|------|-----|------|
| 용적률 | 최고층수 | 300 | 5층이하 |
| 건폐율 | 최저층수 | 70 | - |

② 지원시설용지의 건폐율은 70%이하, 용적률은 300%이하로 적용한다.

③ 건축물의 높이는 5층이하로 한다.

제14조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① 계단실과 승강기 및 주차장(주차설비 포함)은 보행자전용도로변에 설치할 수 없다. 단, 계단실과 승강기 외벽의 50%이상 투시형으로 할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외벽에 반사율이 낮은 유리의 사용을 권장한다.

③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와 보행자전용도로변과의 고저차는 2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지형의 부득이한 이유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다.

제15조 (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주 조 색 | 보 조 색 | 강 조 색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 없음 |

② 건축물 중 외벽의 70% 이상이 유리로 마감될 경우에는 나머지 벽면색은 제1항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①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대지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제17조 (주차장) 지원시설내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다.

제18조 (장애인을 위한 계획) 다중이용시설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사천시 관련 조례를 적용한다.

제4장 기타사항

- 제19조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① 1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하며, 가능한 지주형 간판에 집약설치를 유도한다.
- ② 세로형 간판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1개의 간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1개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로 3m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 이어야 한다.
 3. 2의 규정에 의해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 가로 60cm이내, 세로 200cm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 ③ 돌출간판 및 옥상간판은 가로의 미관을 고려하여 불허한다.
- ④ 보행자전용도로변에는 입체형 간판 또는 차양, 현수막을 이용한 간판을 권장한다.
- ⑤ 기타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사천시 관련 조례 등에 따른다.

- 제20조 (가설건축물 및 기타)** ① 옥상에 설치되는 물탱크 중 기성제품은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 ②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가설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다.

- 제21조 (녹지공간 식재계획)** ① 완충녹지 및 공원내 산책로 주변으로 계절별 수종을 식재해야 한다.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 제22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지구단위계획지침은 다음 각 호의 행위시 적용된다.
1. 신축건축물 및 신축구조물
 2. 재축 건축물 및 구조물
 3. 증축 또는 대수선시의 해당부분

축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97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변경)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26-1번지 일원(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공원, 배수지, 저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 2) 명 칭 : 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A=86,287㎡ (변경없음)

| 구 분 | | 면 적(㎡) | 비 고 |
|-------------|-----------|--------|---------------------|
| 도시계획도로 | 중로1-42호선 | 9,056 | B=20~26.25m, L=392m |
| | 중로1-43호선 | 4,340 | B=20m, L=224m |
| | 중로2-50호선 | 8,024 | B=16~19.25m, L=501m |
| | 중로2-51호선 | 6,741 | B=15m, L=444m |
| | 중로2-52호선 | 5,355 | B=15~18.25m, L=332m |
| | 소로3-157호선 | 731 | B=6m, L=120m |
| | 소로2-257호선 | 232 | B=8m, L=53m |
| 주차장 | 28 | 1,000 | |
| | 29 | 2,070 | |
| 완충녹지 | 46 | 15,450 | |
| | 49 | 4,963 | |
| | 52 | 15,158 | |
| 공 원 | 44 | 2,253 | |
| | 가 | 1,690 | |
| 배수지(수도공급설비) | | 1,824 | |
| 저류시설(유수지) | | 5,850 | |
| 폐수종말처리시설 | | 1,550 | |
| 합 계 | | 86,287 |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1) 성 명 : 위탁자 - 주식회사 장원 대표이사 정형규
수탁자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정준호
- 2) 주 소 : 위탁자 - 경남 사천시 사천읍 두량로 14, 2층
수탁자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골든타워)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1)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 2) 준공예정일 ┌ 당초: 2024. 06. 30.
 └ 변경: 202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8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8호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와 동일함.

□ 산업단지 외의 사업(부진입도로)(변경)

1. 산업단지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외의 사업(부진입도로) 개발사업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로 소형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부진입도로를 지정하고자 함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45번지 일원

○ 면 적 : 1,348㎡ [소로2-258호선 (L=84m, B=8m)]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 당초 - 2020. ~ 2024. 06. 30.

변경 - 2020. ~ 2024. 12. 31.

나. 개발방법 : 실수요자 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해당없음)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위탁자 - 주식회사 장원 대표이사 정형규

수탁자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정준호

나. 주 소 : 위탁자 - 경남 사천시 사천읍 두량로 14, 2층

수탁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가. 지목별 현황

| 구분 | 계 | 전 | 묘 | 임 | 도 | 기타 |
|--------|-------|------|------|------|-----|----|
| 필지수 | 7 | 2 | 1 | 1 | 3 | |
| 면적(㎡) | 1,348 | 581 | 495 | 181 | 91 | |
| 구성비(%) | 100.0 | 43.1 | 36.7 | 13.4 | 6.8 | |

나. 소유자별 현황

| 구분 | 계 | 국·공유지 | | | 사유지 |
|---------------------|-------|-------|-------|------|------|
| | | 소계 | 기획재정부 | 사천시 | |
| 필지수 | 7 | 4 | - | 4 | 3 |
| 면적(m ²) | 1,348 | 553 | - | 553 | 795 |
| 구성비(%) | 100.0 | 41.0 | - | 41.0 | 59.0 |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 구분 | 면적(m ²) | 구성비(%) | 비고 |
|-----------|---------------------|--------|-------------|
| 소로2-258호선 | 1,348 | 100.0 | L=84m, B=8m |

나. 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

| 구분 | 규 모 | | |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소로 | 2 | 258 | 8 | 국지도로 | 84 | 소로2-257 | 사다리 산42-1 | 일반도로 | | 사천시고시 제2021-22호 (2021.01.14.) | |

9. 재원조달계획 (변경)

가. 사업비 330,000천원은 사업시행자가 전체 조달

| 구분 | 금액(천원) | 구성비(%) | 비고 |
|---------|---------|--------|----|
| 계 | 330,000 | 100.0 | |
| 용지비및보상비 | 200,000 | 60.6 | |
| 공사비 | 99,000 | 30.0 | |
| 기타비용 | 31,000 | 9.4 | |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 구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비(천원) | | |
|----|--------|---------|---------|-----------------------|-----------------------|
| | | | 2022년 | 2023년~ 2024년06월30일 | 2023년~ 2024년12월31일 |
| 당초 | 1,348㎡ | 330,000 | 240,000 | 90,000 | - |
| 변경 | 1,348㎡ | 330,000 | 240,000 | 90,000 | |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11. 유치업종 배치계획 (해당없음)

1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해당없음)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가. 사천시 무상귀속

| 구분 | 면적(㎡) | 구성비(%) | 관리처분계획 |
|---------------|-------|--------|---------|
| 도로(소로2-258호선) | 1,348 | 100.0 | 사천시무상귀속 |

나. 사업시행자 귀속 (해당없음)

1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구분 | 규 모 | | |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소로 | 2 | 258 | 8 | 국지도로 | 84 | 소로2-257 | 사다리 산42-1 | 일반도로 | | 사천시고시 제2021-22호 (2021.01.14.) | |

15.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사천시청(투자유치산단과)에 두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도서 게재생략)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97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변경)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4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 칭 : 축동일반산업단지외의 사업(부진입도로)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구 분 | | 면적 또는 규모 | 비 고 |
|-----|-----------|-----------------------|-----|
| 도 로 | 소로2-258호선 | L=84m, B=8m, A=1,348㎡ |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위탁자 - 주식회사 장원 대표이사 정형규
수탁자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정준호
- 2) 주 소 : 위탁자 - 경남 사천시 사천읍 두량로 14, 2층
수탁자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골든타워)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1)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 2) 준공예정일 ▮ 당초: 2024. 06. 30.
└ 변경: 202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8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8호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와 동일함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사천시 고시 제2024-112호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외의 사업(주진입도로) 실시계획(변경) 승인·지형도면고시

사천시 고시 제2021-71호(2021.04.01.)로 최초 승인·고시하고 사천시 고시 제2022-283호(2022.12.22.)로 변경 승인·고시한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외의 사업(주진입도로) 실시계획(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사 천 시 장

산업단지 외의 사업(주진입도로) (변경)

1. 산업단지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외의 사업(주진입도로) 개발사업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및 대동일반산업단지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향후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진주지구)와의 연계를 위한 진입 도로를 지정하고자 함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250-7번지 일원
- 규 모 : 8,142㎡ → 8,540㎡ (증 398㎡)
 - 중로1-56호선 (L=217m, B=20m, A=5,262㎡→5,008㎡)
 - 소로1-2호선 (일부구간 L=150m, B=10~20m A=2,880㎡→3,532㎡)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 개발기간 : 당초 - 2020. ~ 2024. 06. 30.
변경 - 2020. ~ 2024. 12. 31.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해당없음)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
- 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

가. 지목별 현황

| 구분 | | 계 | 답 | 임 | 도 | 구 | 창 | 과 | 대 |
|--------|----|-------|-------|-----|-------|-----|-------|-----|-----|
| 필지수 | 당초 | 41 | 11 | 3 | 18 | 2 | 3 | | |
| | 변경 | 44 | 11 | 4 | 21 | 3 | 3 | 1 | 1 |
| 면적(㎡) | 당초 | 8,142 | 2,978 | 505 | 2,369 | 574 | 1,716 | | |
| | 변경 | 8,540 | 2,978 | 536 | 2,647 | 633 | 1,716 | 8 | 22 |
| 구성비(%) | 당초 | 100.0 | 36.6 | 6.2 | 29.1 | 7.0 | 21.1 | | |
| | 변경 | 100.0 | 34.9 | 6.3 | 31.0 | 7.5 | 20.1 | 0.1 | 0.3 |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나. 소유자별 현황

| 구분 | 계 | 국·공유지 | | | | | 사유지 | |
|---------------------|----|-------|-----------|-------------|-----------|-----|-------|-------|
| | | 소계 | 국토 교통부 | 농림축산 식품부 | 기획 재정부 | 사천시 | | |
| 필지수 | 당초 | 41 | 26 | 15 | 2 | 1 | 8 | 15 |
| | 변경 | 44 | 33 | 15 | 2 | 1 | 15 | 11 |
| 면적(m ²) | 당초 | 8,142 | 3,221 | 1,908 | 565 | 116 | 632 | 4,921 |
| | 변경 | 8,540 | 6,062 | 2,214 | 624 | 116 | 3,108 | 2,478 |
| 구성비(%) | 당초 | 100.0 | 39.5 | 23.4 | 6.9 | 1.4 | 7.8 | 60.5 |
| | 변경 | 100.0 | 71.0 | 25.9 | 7.3 | 1.4 | 36.4 | 29.0 |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구 분 | 면적(m ²) | | 구성비(%) | | 비고 |
|---------------|---------------------|-------|--------|-------|--------------------------|
|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
| 총 계 | 8,142 | 8,540 | 100.0 | 100.0 | - |
| 중로1-56호선 | 5,262 | 5,008 | 64.7 | 58.6 | L=217m, B=20m |
| 소로1-2호선(일부구간) | 2,880 | 3,532 | 35.3 | 41.4 | 일부구간 L=150m, B=10~20m |

나. 기반시설계획

| 구분 | 규 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중로 | 1 | 56 | 20 | 집산 도로 | 217 (217) | 소로1-2 | 중로1-42 | 일반 도로 | | 2021.01.14. (사천2021-22) | |
| 변경 | 중로 | 1 | 56 | 20 | 집산 도로 | 217 (217) | 소로1-2 | 중로1-42 | 일반 도로 | | | 선형변경 및 면적축소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 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사항과 일치시키기 위 한 변경) |
| 기정 | 소로 | 1 | 2 | 10~30.5 (10~20) | 집산 도로 | 10,956 (150) | 중로1-7 | 축동면구역계 | 일반 도로 | 대로2-1 | 2011.07.28. (사천2011-89) | |
| 변경 | 소로 | 1 | 2 | 10~30.5 (10~20) | 집산 도로 | 10,956 (150) | 중로1-7 | 축동면구역계 | 일반 도로 | 대로2-1 | | 선형변경 및 면적증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 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사항과 일치시키기 위 한 변경) |

※ ()는 산업단지외 사업(진입도로)내의 구간임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9.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사업비 3,434,000천원은 주식회사 장원에서 조달

나. 연차별 투자계획

| 구분 | 사업량 (㎡) | 사업비 | 사업비 (천원) | |
|----|---------|-----------|-----------|-----------|
| | | | 2023년 | 2024년 |
| 당초 | 8,142㎡ | 3,434,000 | 2,000,000 | 1,434,000 |
| 변경 | 8,540㎡ | 3,434,000 | 2,000,000 | 1,434,000 |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붙임)

11. 유치업종 배치계획 (해당없음)

1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해당없음)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변경)

○ 사천시 귀속

| 구분 | 면적(㎡) | | 구성비(%) | | 관리처분계획 |
|---------------|-------|-------|--------|-------|--------|
|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
| 사천시귀속면적 | 8,142 | 8,540 | 100.0 | 100.0 | - |
| 중로1-56호선 | 5,262 | 5,008 | 64.7 | 58.6 | 사천시귀속 |
| 소로1-2호선(일부구간) | 2,880 | 3,532 | 35.3 | 41.4 | 사천시귀속 |

1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변경)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 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중로 | 1 | 56 | 20 | 집산 도로 | 217 (217) | 소로1-2 | 중로1-42 | 일반 도로 | | 2021.01.14. (사천2021-22) | |
| 변경 | 중로 | 1 | 56 | 20 | 집산 도로 | 217 (217) | 소로1-2 | 중로1-42 | 일반 도로 | | | 선형변경 및 면적축소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 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사항과 일치시키기 위 한 변경) |
| 기정 | 소로 | 1 | 2 | 10~30.5 (10~20) | 집산 도로 | 10,956 (150) | 중로1-7 | 축동면구역계 | 일반 도로 | 대로2-1 | 2011.07.28. (사천2011-89) | |
| 변경 | 소로 | 1 | 2 | 10~30.5 (10~20) | 집산 도로 | 10,956 (150) | 중로1-7 | 축동면구역계 | 일반 도로 | 대로2-1 | | 선형변경 및 면적증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 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사항과 일치시키기 위 한 변경) |

※ ()는 산업단지의 사업(진입도로)내의 구간임

나.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중로1-56호선 | 중로1-56호선 | 선형변경 및 면적축소 (5,262㎡→5,007㎡) (감 255㎡)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 행허가사항과 일치시키기 위한 변경 |
| 소로1-2호선 | 소로1-2호선 | 선형변경 및 면적증가 (2,880㎡→3,533㎡) (증 653㎡) | |

15.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사천시청(투자과)에 두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도서 게재생략)

축동일반산업단지외사업(주진입도로) [변경]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1)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 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 정 | 중로 | 1 | 56 | 20 | 집산 도로 | 217 (217) | 소로1-2 | 중로1-42 | 일반 도로 | | 2021.01.14. (사천2021-22) | |
| 변 경 | 중로 | 1 | 56 | 20 | 집산 도로 | 217 (217) | 소로1-2 | 중로1-42 | 일반 도로 | | | 선형변경 및 면적 축소 (도로관리청 이 아닌 자의 도로 공사 시행허가사항 과 일치시키기 위 한 변경) |
| 기 정 | 소로 | 1 | 2 | 10~30.5 (10~20) | 집산 도로 | 10,956 (150) | 중로1-7 | 축동면구역 계 | 일반 도로 | 대로2-1 | 2011.07.28. (사천2011-89) | |
| 변 경 | 소로 | 1 | 2 | 10~30.5 (10~20) | 집산 도로 | 10,956 (150) | 중로1-7 | 축동면구역 계 | 일반 도로 | 대로2-1 | | 선형변경 및 면적 증가 (도로관리청 이 아닌 자의 도로 공사 시행허가사항 과 일치시키기 위 한 변경) |

※ ()는 산업단지의 사업(주진입도로)내의 구간임

(2)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중로1-56호선 | 중로1-56호선 | 선형변경 및 면적축소 (5,262㎡→5,008㎡) (감 254㎡) | · 토지분할 및 사면부 추가 토지편입 · 현장여건 반영 및 도로관리청이 아 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사항과 일치하기 위한 변경 |
| 소로1-2호선 | 소로1-2호선 | 선형변경 및 면적증가 (2,880㎡→3,532㎡) (증 652㎡)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97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250-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 칭 : 축동일반산업단지외의 사업(주진입도로)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구 분 | | 면적 또는 규모 | 비 고 |
|-----|----------|--|------|
| 도 로 | 중로1-56호선 | 당초 : L=217m, B=20m, A=5,262m ² 변경 : L=217m, B=20m, A=5,008m ² | 면적감소 |
| | 소로1-2호선 | 당초 : L=150m, B=10~20m, A=2,880m ² 변경 : L=150m, B=10~20m, A=3,532m ² | 면적증가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사천시장
- 2)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1)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 2) 준공예정일 ┌ 당초 - 2024. 6. 30.
 └ 변경 - 202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8호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와 동일함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구분 | 공부 면적 (㎡) | 편입 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 비고 |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
| 1 | 축동면 사다리 | 214-3 | 도 | 당초 | 3,269 | 57 | 국 (국토교통부) | | | | |
| | | | | 변경 | 3,269 | 243 | | | | | |
| 2 | 축동면 사다리 | 214-5 | 답 | | 400 | 400 | (주)코람코 자산신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 (삼성동,골든타워) | | | |
| 3 | 축동면 사다리 | 214-6 | 답 | | 453 | 453 | 손*안 울산광역시 중구 강북로 1**, ***동 ****호(옥*동,태화강****) | | (주)한국 투자저 축은행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4(서현동) | 근저당 |
| | | | | | | | | | 웰컴저 축은행(주)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0(구로동,지벨 리비즈플라자) | 근저당 |
| | | | | | | | | | (주)상상 인저축 은행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서현동) | 근저당 |
| | | | | | | | | | (주)상상 인플러 스저축 은행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1로 67-12,2층(불당동) | 근저당 |
| | | | | | | | | | 더케이 저축은 행(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3(역삼동) | 근저당 |
| | | | | | | | | | (주)하나 저축은 행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6층(역삼동) | 근저당 |
| | | | | | | | | | (주)흥국 저축은 행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6(연산동) | 근저당 |
| | | | | | | | | | (주)아산 저축은 행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381(온천동) | 근저당 |
| | | | | | | | | | (주)스카 이저축 은행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03(논현동) | 근저당 |
| | | | | | | | | | (주)솔브 레인저 축은행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4(연산동) | 근저당 |
| 4 | 축동면 사다리 | 214-7 | 답 | | 221 | 221 | (주)코람코 자산신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든타 워) | | | |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구분 | 공부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 비고 |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
| 5 | 축동면 사다리 | 214-8 | 답 | | 261 | 261 | 손*안 | 울산광역시 중구 강북로 1**, ***동 ****호(옥*동,태화강****) | (주)한국 투자저 축은행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4(서현동) | 근저당 |
| | | | | | | | | | 웰컴저 축은행(주)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0(구로동,지벨 리비즈플라자) | 근저당 |
| | | | | | | | | | (주)상상 인저축 은행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서현동) | 근저당 |
| | | | | | | | | | (주)상상 인플러 스저축 은행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1로 67-12,2층(불당동) | 근저당 |
| | | | | | | | | | 더케이 저축은 행(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3(역삼동) | 근저당 |
| | | | | | | | | | (주)하나 저축은 행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6층(역삼동) | 근저당 |
| | | | | | | | | | (주)흥국 저축은 행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6(연산동) | 근저당 |
| | | | | | | | | | (주)아산 저축은 행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381(온천동) | 근저당 |
| | | | | | | | | | (주)스카 이저축 은행 |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동로 103(논현동) | 근저당 |
| (주)솔브 레인저 축은행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4(연산동) | 근저당 | | | | | | | | | |
| 6 | 축동면 사다리 | 215-1 | 답 | | 341 | 341 | (주)코람코 자산신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든타 워) | | | |
| 7 | 축동면 사다리 | 215-2 | 답 | | 40 | 40 | 손*안 | 울산광역시 중구 강북로 1**, ***동 ****호(옥*동,태화강****) | (주)한국 투자저 축은행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4(서현동) | 근저당 |
| | | | | | | | | | 웰컴저 축은행(주)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0(구로동,지벨 리비즈플라자) | 근저당 |
| | | | | | | | | | (주)상상 인저축 은행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서현동) | 근저당 |
| | | | | | | | | | (주)상상 인플러 스저축 은행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1로 67-12,2층(불당동) | 근저당 |
| | | | | | | | | | 더케이 저축은 행(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3(역삼동) | 근저당 |
| | | | | | | | | | (주)하나 저축은 행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6층(역삼동) | 근저당 |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구분 | 공부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 비고 |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
| | | | | | | | | | (주)한국저축은행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6(연산동) | 근저당 |
| | | | | | | | | | (주)아산저축은행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381(온천동) | 근저당 |
| | | | | | | | | | (주)스카이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03(논현동) | 근저당 |
| | | | | | | | | | (주)솔브레인저축은행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4(연산동) | 근저당 |
| 8 | 축동면사다리 | 216-1 | 답 | | 687 | 687 | (주)코람코 자산신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든타워) | | | |
| 9 | 축동면사다리 | 216-2 | 답 | | 14 | 14 | 손*안 | 울산광역시 중구 강북로 1**, ***동 ****호(옥*동,태화강****) | (주)한국투자저축은행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4(서현동) | 근저당 |
| | | | | | | | | | 웰컴저축은행(주)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0(구로동,지벨리비즈플라자) | 근저당 |
| | | | | | | | | | (주)상상인저축은행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서현동) | 근저당 |
| | | | | | | | | |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1로 67-12,2층(불당동) | 근저당 |
| | | | | | | | | | 더케이저축은행(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3(역삼동) | 근저당 |
| | | | | | | | | | (주)하나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6층(역삼동) | 근저당 |
| | | | | | | | | | (주)한국저축은행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6(연산동) | 근저당 |
| | | | | | | | | | (주)아산저축은행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381(온천동) | 근저당 |
| (주)스카이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03(논현동) | 근저당 | | | | | | | | | |
| (주)솔브레인저축은행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4(연산동) | 근저당 | | | | | | | | | |
| 10 | 축동면사다리 | 217-6 | 답 | 당초 | 283 | 283 | 정*녀 | 사다리 ***_* | | | |
| | | | | 변경 | 283 | 283 | 사천시 | | | | |
| 11 | 축동면사다리 | 247-18 | 도 | 당초 | 18 | 13 | 국 (국토교통부) | | | | |
| | | | | 변경 | 18 | 18 | | | | | |
| 12 | 축동면사다리 | 247-19 | 도 | 당초 | 168 | 43 | 국 (국토교통부) | | | | |
| | | | | 변경 | 168 | 168 | | | | | |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구분 | 공부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 비고 |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
| 13 | 축동면 사다리 | 249-1 | 답 | | 162 | 162 | 국(국토교통부) | | | | |
| 14 | 축동면 사다리 | 249-5 | 답 | | 116 | 116 | 국(기획재정부) | | | | |
| 15 | 축동면 사다리 | 250 | 창 | 당초 | 64 | 64 | 정*녀 | 사다리 ***_* | | | |
| | | | | 변경 | 64 | 64 | 사천시 | | | | |
| 16 | 축동면 사다리 | 250-2 | 도 | | 189 | 189 | 사천시 | | | | |
| 17 | 축동면 사다리 | 250-4 | 도 | | 37 | 37 | 국(국토교통부) | | | | |
| 18 | 축동면 사다리 | 250-6 | 도 | | 306 | 265 | 국(국토교통부) | | | | |
| 19 | 축동면 사다리 | 250-7 | 도 | | 229 | 229 | 국(국토교통부) | | | | |
| 20 | 축동면 사다리 | 250-8 | 창 | 당초 | 1,074 | 1,074 | 정*녀 | 사다리 ***_* | | | |
| | | | | 변경 | 1,074 | 1,074 | 사천시 | | | | |
| 21 | 축동면 사다리 | 250-9 | 창 | 당초 | 578 | 578 | 정*녀 | 사다리 ***_* | | | |
| | | | | 변경 | 578 | 578 | 사천시 | | | | |
| 22 | 축동면 사다리 | 250-10 | 도 | | 5 | 5 | 국(국토교통부) | | | | |
| 23 | 축동면 사다리 | 251-2 | 구 | | 26 | 9 | 사천시 | | | | |
| 24 | 축동면 사다리 | 252-6 | 도 | | 8,287 | 89 | 국(국토교통부) | | | | |
| 25 | 축동면 사다리 | 387-18 | 도 | | 28 | 28 | 사천시 | | | | |
| 26 | 축동면 사다리 | 387-19 | 도 | 당초 | 367 | 160 | 사천시 | | | | |
| | | | | 변경 | 367 | 135 | | | | | |
| 27 | 축동면 사다리 | 387-20 | 도 | 당초 | 248 | 2 | 사천시 | | | | |
| | | | | 변경 | 248 | - | | | | | |
| 28 | 축동면 사다리 | 387-21 | 도 | | 220 | 58 | 사천시 | | | | |
| 29 | 축동면 사다리 | 387-22 | 도 | | 246 | 13 | 사천시 | | | | |
| 30 | 축동면 사다리 | 387-33 | 도 | 당초 | 172 | 173 | 사천시 | | | | |
| | | | | 변경 | 172 | 172 | | | | | |
| 31 | 축동면 사다리 | 387-34 | 도 | | 6 | 6 | 국(국토교통부) | | | | |
| 32 | 축동면 사다리 | 422-2 | 도 | 당초 | 17 | 3 | 국(국토교통부) | | | | |
| | | | | 변경 | 17 | 2 | | | | | |
| 33 | 축동면 사다리 | 1052-18 | 구 | | 581 | 508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
| 34 | 축동면 사다리 | 1052-19 | 구 | 당초 | 1,163 | 57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
| | | | | 변경 | 1,163 | 116 | | | | | |

| 연번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구분 | 공부 면적 (㎡) | 편입 면적 (㎡) | 소 유 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 비고 |
|-----|------------|--------|-----|---------------|----------------------|-----------------|--------------|-----------------------|---------------|-----|----|
| | | | | | |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
| 35 | 축동면 사다리 | 1057 | 도 | 당초 | 227 | 97 | 국 (국토교통부) | | | | |
| | | | | 변경 | 227 | 110 | | | | | |
| 36 | 축동면 사다리 | 1057-2 | 도 | 당초 | 485 | 455 | 국 (국토교통부) | | | | |
| | | | | 변경 | 485 | 424 | | | | | |
| 37 | 축동면 사다리 | 산20-7 | 임 | 당초 | 296 | 296 | 이*규 | 부산 중구 부평동*가 **.* | 국(서부산 세무서) | | 압류 |
| | | | | | | | | | 부산광역시 중구 | | 압류 |
| | | | | 부산광역시 사하구 | | 압류 | | | | | |
| | | | | 국(중부산 세무서) | | 압류 | | | | | |
| | | | | 서울보증보 협(주) |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 가압류 | | | | | |
| 변경 | 296 | 296 | 사천시 | | | | | | | | |
| 38 | 축동면 사다리 | 산20-21 | 임 | 당초 | 1 | 1 | 이*규 | 부산 중구 부평동*가 **.* | 국(서부산 세무서) | | 압류 |
| | | | | | | | | | 부산광역시 중구 | | 압류 |
| | | | | 부산광역시 사하구 | | 압류 | | | | | |
| | | | | 국(중부산 세무서) | | 압류 | | | | | |
| | | | | 서울보증보 협(주) |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 가압류 | | | | | |
| 변경 | 1 | 1 | 사천시 | | | | | | | | |
| 39 | 축동면 사다리 | 산20-22 | 임 | 당초 | 208 | 208 | 이*규 | 부산 중구 부평동*가 **.* | 국(서부산 세무서) | | 압류 |
| | | | | | | | | | 부산광역시 중구 | | 압류 |
| | | | | 부산광역시 사하구 | | 압류 | | | | | |
| | | | | 국(중부산 세무서) | | 압류 | | | | | |
| | | | | 서울보증보 협(주) |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 가압류 | | | | | |
| 변경 | 208 | 208 | 사천시 | | | | | | | | |
| 40 | 축동면 사다리 | 산32-14 | 도 | 당초 | 298 | 290 | 국 (국토교통부) | | | | |
| | | | | 변경 | 298 | 298 | | | | | |
| 41 | 축동면 사다리 | 산32-21 | 도 | 당초 | 158 | 157 | 국 (국토교통부) | | | | |
| | | | | 변경 | 158 | 158 | | | | | |
| 42 | 축동면 사다리 | 247-28 | 과 | 신규 | 8 | 8 | 이*하 | 경남 함안군 칠원읍 웅곡*길 ** | | | |
| 43 | 축동면 사다리 | 247-29 | 대 | 신규 | 22 | 22 | 이*하 | 경남 함안군 칠원읍 웅곡*길 ** | | | |
| 44 | 축동면 사다리 | 산20-35 | 임 | 신규 | 31 | 31 | 이*규 | 부산 중구 부평동 *가 **.* | | | |
| 합 계 | | | | 당초 | 21,949 | 8,142 | | | | | |
| | | | | 변경 | 22,010 | 8,540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사천시 고시 제2024-114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고시

「지방자치법」 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사 천 시 장

1. 세입·세출 결산

1. 결산총괄

(단위: 원)

| 구 분 |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결산상 잉여금 | | | |
|---------------|-------------------|-------------------|-----------------|-----------------|----------------------------------|----------------|----------------|
| | | | | 소 계 | 다음연도 이월액 | 보 조 금 실제반납금 | 순 세 계 잉 여 금 |
| 합 계 | 1,101,875,099,800 | 1,114,768,103,499 | 898,777,936,680 | 215,990,166,819 | 156,629,816,402 (988,779,500) | 7,042,178,140 | 52,318,172,277 |
| 일반회계 | 1,021,307,067,110 | 1,035,785,895,531 | 833,308,190,665 | 202,477,704,866 | 152,257,017,812 (988,779,500) | 6,728,223,040 | 43,492,464,014 |
| 특별회계 | 80,568,032,690 | 78,982,207,968 | 65,469,746,015 | 13,512,461,953 | 4,372,798,590 | 313,955,100 | 8,825,708,263 |
| 공 기 업 특별회계 | 41,379,368,270 | 39,274,188,929 | 33,905,832,382 | 5,368,356,547 | 2,871,129,880 | 0 | 2,497,226,667 |
| 기 타 특별회계 | 39,188,664,420 | 39,708,019,039 | 31,563,913,633 | 8,144,105,406 | 1,501,668,710 | 313,955,100 | 6,328,481,596 |

※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로 별도 표시

2. 세입결산

(단위: 원)

| 구 분 | 예산현액 ㉑ | 징수결정액 ㉒ | 실제수납액 ㉓ | 정리보류액 ㉔ | 미수납액 ㉕=㉒-㉓-㉔ |
|---------------|-------------------|-------------------|-------------------|---------------|-----------------|
| 합 계 | 1,101,875,099,800 | 1,131,235,861,213 | 1,114,768,103,499 | 1,777,677,914 | 14,690,079,800 |
| 일반회계 | 1,021,307,067,110 | 1,051,300,174,977 | 1,035,785,895,531 | 1,777,677,914 | 13,736,601,532 |
| 특별회계 | 80,568,032,690 | 79,935,686,236 | 78,982,207,968 | 0 | 953,478,268 |
| 공 기 업 특별회계 | 41,379,368,270 | 40,129,874,669 | 39,274,188,929 | 0 | 855,685,740 |
| 기 타 특별회계 | 39,188,664,420 | 39,805,811,567 | 39,708,019,039 | 0 | 97,792,528 |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3. 세출결산

(단위: 원)

| 구 분 | 예산현액 ㉑ | 지출액 ㉒ | 다음연도이월액 ㉓ | 보조금반납금 ㉔ | 집행잔액 ㉕=㉑-㉒-㉓-㉔ |
|---------------|-------------------|-----------------|----------------------------------|---------------|-------------------|
| 합 계 | 1,101,875,099,800 | 898,777,936,680 | 157,618,595,902 (988,779,500) | 7,788,705,220 | 37,689,861,998 |
| 일반회계 | 1,021,307,067,110 | 833,308,190,665 | 153,245,797,312 (988,779,500) | 7,474,750,370 | 27,278,328,763 |
| 특별회계 | 80,568,032,690 | 65,469,746,015 | 4,372,798,590 | 313,954,850 | 10,411,533,235 |
| 공 기 업 특별회계 | 41,379,368,270 | 33,905,832,382 | 2,871,129,880 | | 4,602,406,008 |
| 기 타 특별회계 | 39,188,664,420 | 31,563,913,633 | 1,501,668,710 | 313,954,850 | 5,809,127,227 |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로 별도 표시

II. 재무제표

1. 재무제표 요약

(단위: 원)

| 재 정 상 태 | | | 재 정 운 영 | | |
|-------------------|----------------|-------------------|-----------------|-----------------|------------------|
| 총자산 ㉑ | 총부채 ㉒ | 순자산 ㉓=㉑-㉒ | 총비용 ㉔ | 총수익 ㉕ | 재정운영결과 ㉖=㉕-㉔ |
| 3,817,641,724,637 | 59,380,439,890 | 3,758,261,284,747 | 693,713,617,716 | 845,877,600,301 | △152,163,982,585 |

2. 채권결산

(단위: 원)

| 구 분 | 전년도말 현재액 ㉑ | 당해연도 발생액 ㉒ | 당해연도 소멸액 ㉓ | 당해연도말 현재액 ㉔=㉑+㉒-㉓ |
|------|---------------|---------------|---------------|----------------------|
| 합 계 | 7,549,109,082 | 3,605,111,739 | 4,623,684,986 | 6,530,535,835 |
| 일반회계 | 5,825,572,457 | 955,198,320 | 3,127,512,200 | 3,653,258,577 |
| 특별회계 | 1,723,536,625 | 2,609,913,419 | 1,496,172,786 | 2,837,277,258 |
| 기금 | 0 | 40,000,000 | 0 | 40,000,000 |

3. 채무결산

(단위: 원)

| 구 분 | 전년도말 현재액 ㉑ | 당해연도 증감액 ㉒ | 당해연도말 현재액 ㉓=㉑+㉒ |
|------|----------------|----------------|--------------------|
| 계 | 22,131,250,000 | △6,221,875,000 | 15,909,375,000 |
| 일반회계 | 14,531,250,000 | △1,171,875,000 | 13,359,375,000 |
| 특별회계 | 7,600,000,000 | △5,050,000,000 | 2,550,000,000 |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Ⅲ. 기금결산

(단위: 원)

| 전년도말 조성액 ㉑ | 당해연도 증감액 | | | 당해연도말 조성액 ㉒=㉑+㉓ |
|----------------|----------------|----------------|----------------|--------------------|
| | 계 ㉓=㉔-㉕ | 조 성 액 ㉔ | 사 용 액 ㉕ | |
| 45,653,502,618 | △7,596,518,295 | 24,195,475,145 | 31,791,993,440 | 38,056,984,323 |

Ⅳ.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1. 공유재산결산

(단위: 원)

| 전년도말 현재액 ㉑ | 당해연도 증감액 | | | 당해연도말 현재액 ㉒=㉑+㉓ |
|-------------------|-----------------|-----------------|-----------------|--------------------|
| | 계 ㉓=㉔-㉕ | 증 가 액 ㉔ | 감 소 액 ㉕ | |
| 2,155,553,417,284 | 156,300,407,851 | 305,312,729,533 | 149,012,321,682 | 2,311,853,825,135 |

2. 물품결산

(단위: 원)

| 전년도말 현재액 ㉑ | 당해연도 증감현황 | | | 당해연도말 보유액 ㉒=㉑+㉓ |
|----------------|---------------|---------------|-------------|--------------------|
| | 계 ㉓=㉔-㉕ | 취 득 ㉔ | 처 분 ㉕ | |
| 14,294,197,770 | 2,021,235,747 | 2,150,132,747 | 128,897,000 | 16,315,433,517 |

Ⅴ. 성과보고서

(단위: 개)

| 구 분 | 성과목표 | | | | | |
|-----|------|--------|-----|--------|-----|-----|
| | 전략목표 | 정책사업목표 | | 성과 달성도 | | |
| | | 개수 | 지표수 | 초과달성 | 달성 | 미달성 |
| 합 계 | 10 | 70 | 217 | 30 | 161 | 26 |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사천시 공고 제2024-928호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20대 국정과제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과 관련, 개최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지자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비상설 위원회 전환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안 제7조제8항)
- 나.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2)
-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3)
- 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4)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254, FAX: 831- 6011)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발굴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를 “발굴하고, 대상 시책이 있을 경우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여”로 한다.

제7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한 시책일몰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사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일몰 대상 시책을 등을 <u>발굴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u></p> | <p>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 ----- ----- <u>발굴하고, 대상 시책이 있을 경우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여</u> ----- -----.</p> |
| <p>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⑥ (생략) ⑦ 삭제 <u><신 설></u></p> <p><u><신 설></u></p> | <p>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p> <p><u>⑧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u></p> <p><u>제7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u>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u> <u>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u> |

<신 설>

4.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

<신 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
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
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
여야 한다.

제7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
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사천시 공고 제2024-951호

「사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 및 장소를 지정하여 화물자동차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도시 내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범위(안 제3조)
- 다. 밤샘주차 지정 장소의 취소(안 제6조)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교통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교통행정과)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360, FAX: 831- 6049)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제3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도로. 다만, 밤샘주차 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에 한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3. 공지(空地)

② 시장은 밤샘주차 장소가 도로인 경우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고, 사유지인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장소 및 구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관리) ① 화물자동차 운송·운송가맹 사업자, 소유자 및 사용자(이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를 제외하고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는 밤샘주차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의 중지) 시장은 축제,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해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 및 장소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6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사천시 공고 제2024-952호

「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화학사고 대비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안 제4조~제14조)
- 다.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라.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고지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마. 교육·훈련,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한 비용 지원(안 제19조~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70,

FAX : 831-6025)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천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천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경상남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 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16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 관리 업무 담당 국장과 재난안전 관리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3.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가. 사천경찰서, 사천소방서

나.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

다.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

5.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시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천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이 정한 사항

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시장이 법 제23조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 중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제18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시 누리집에 게재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화학물질 취급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94호

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고대응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비용발생)요인

- 조례안 제20조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2. 미첨부 근거 규정

-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소요예산
 -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 방재 장비 지원: 20,000천원
 - 교육 및 합동훈련 경비 지원: 5,000천원
- 「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합동훈련에 드는 비용으로써 소요예산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함.

작성자: 환경보호과장 장수영

관 련 법 규

□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교육
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8.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
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의 구성·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인적사항,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의 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⑤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기준, 공개절차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9호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④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화학 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현장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방법과 제출 시기·방법, 현장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로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취급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고지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 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통지, 개별설명 또는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의 방법에 따

른 고지 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정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의 장이 화학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방지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마친 것으로 본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법 제2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해당 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개별통지 방법: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2. 개별설명 방법: 개별 설명 후 서명날인
3. 집합전달 방법: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달
4. 그 밖의 고지 방법: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반상회보·소식지 게재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사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정보제공)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5항에 따른 허가일·변경허가일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증 사본 또는 신고증 사본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를 1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관할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